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9
------	------

2025.06.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8일, 이민석 의원(찬성 22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6.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함.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사용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894개¹⁾ 중 ‘심신장애’ 등 장애인 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 4개(조문 5건)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²⁾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1개(조문 1건)를 대상으로 총 6건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조례	개정안
제2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심신장애	건강상 이유
제3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일반인	비장애인
제4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지체부자유자가	지체장애인이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별표 5 제2호 기관란 제2호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별표 5 제3호 기관란 제3호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	부랑자·걸인·정신장애인·요보호여성
제6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제1호나목제2호 감면대상란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 현재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는 조례 894개, 규칙 234개, 훈령 34개, 예규 12개가 등록되어 있음(2025.4.6.기준).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심신장애’ 라는 용어를 ‘건강상 이유’ 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²⁾에 따라 ‘심신장애’ 라는 용어를 이미 3차례³⁾에 걸쳐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정비한 바 있음.
- 따라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안 제2호와 같이 ‘심신장애’ 를 ‘건강상 이유’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심신장애’ 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3조(개정안과 같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수정안과 같음)

-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중 ‘지체부자유자’ 라는 용어를 ‘지체장애인’ 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체부자유자’

2) 지난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017)하고, 조례 중에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와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2018.10.31.).

3) 제286회 임시회(2019.4.), 제287회 정례회(2019.6.), 제320회 임시회(2023.9.)에서 정비하였으며, 특히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였음.

라는 용어는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⁴⁾에 따라 ‘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

-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비하는 것으로, ‘정신박약’은 기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사용된 용어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1989년 ‘정신지체’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장애’로 재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동 용어의 개선은 법령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⁵⁾에 따라 ‘정신이상자’와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축소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의학적·법률적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 용어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3]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 지체장애인은 제1호에 해당하며, 팔·다리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5)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229쪽.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은 다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신분열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병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명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폐지 정책을 반영한 것임[참고자료1].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조례 간의 표현을 일원화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한편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용어 중 ‘일반인’ 을 ‘비장애인’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 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동 조례 제5조의 조문⁶⁾은 문맥상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 대상자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유가족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용어를 ‘비장애인’ 으로 개정할 경우 조례의 취지와 문맥을 왜곡하게 되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 대상자’ 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어 행정 집행과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안 제3조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 수정 의견 >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 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인”을 “비장애인”로 한다.	<삭제>
제4조~제6조 (생략)	제3조~제5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의 정비대상인 ‘심신장애’ 용어는 종전 일괄개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건강상 이유’가 아닌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의 정비대상인 ‘일반인’은 장애 차별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정비하는 안 제2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정비하는 안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하는 안 제3조를 삭제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9
----------	---------

제안년월일 : 2025년 6월 1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의 정비대상인 ‘심신장애’ 용어는 종전 일괄개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건강상 이유’가 아닌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의 정비대상인 ‘일반인’은 장애 차별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정비하는 안 제2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정비하는 안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하는 안 제3조를 삭제함.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건강상 이유’ 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생 략)	제1조(개정안과 같음)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 <u>건강상 이유</u>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 <u>장기간의 심신쇠약</u> ”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 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u>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삭제>
제5조제1항 중 “일반인”을 “비장애인”로 한다.	
제4조~제6조 (생 략)	제3조~제5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가”를 “지체장애인이”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기관란 제2호 중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을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기관란 제3호 중 “부랑자·결인·정신이 상자·요보호여성”을 “부랑자·결인·정신장애인·요보호여성”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제2호 감면대상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